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15
----------	----

제안연월일 : 2022. 9.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에 의거 평창군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해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평창군가족센터(구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치 : 평창읍 평창중앙로 67(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 규모 : 4개소(사무실1, 상담실1, 교류소통공간1, 공동육아나눔터1)
※ 면적 : 233.83㎡(사무실57, 상담실39, 교류소통공간39, 공동육아나눔터98.83)
- 종사자 : 11명(센터장1 팀장1 팀원3 통번역지원사1 이중언어코치1 방문교육지도사2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1, 추가관리인력1)
- 사업비('22년 기준) : 541,074천원(국비, 도비, 군비)

3. 시설 및 위탁연혁

-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군청 문서기록실 4층) : 2009. 4.
-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 2018. 1.
- 통합센터 명칭 변경(가족센터) : 2021. 10.

○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연혁

위탁기간	수탁법인	비고
2011. 4. 20. ~ 2013. 12. 31.(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 ※ 설립일자 : 2009. 12. 9.	공개모집
2014. 1. 1. ~ 2016. 12. 31.(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	공개모집
2017. 1. 1. ~ 2019. 12. 31.(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	공개모집
2020. 1. 1. ~ 2022. 12. 31.(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	공개모집

4. 위탁사무 개요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위탁사무 내역

사무영역	사무내용	비고
센터운영	- 가족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가족관계	- 부모역할 지원 (임신출산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등) - 부부역할 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등) -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등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등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 가족역량강화지원	교육, 사례관리, 돌보미과전, 상담 등
가족생활	- 맞벌이가정·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친화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등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특성화 사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	군 별도사업 등

5. 향후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0. 17. ~ 10. 30.(14일)
- 선정위원회 구성 : 2022. 11. 2. ~ 11. 11.(10일)
- 위탁 대상기관 심의선정 : 2022. 11. 14. ~ 11. 23.(10일)
-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 공증 : 2022. 11. 28. ~ 12. 7.(10일)
- 위탁업무 수행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6.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 및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
-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

7. 관련자료

- 관계법령 1부. 끝.

관계법령 발취

【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 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8조(위탁운영)

-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 11조에 따른 평창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체육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